



가

[2015.3.11.] [26140 , 2015.3.11.,]

() 02 - 2100 - 6622

1

1 () 「 가 」 55 59 , 59 2 60 67
가 .

[2011.7.4.]

2 () 가 (" ") 「 가 」 (" ") 55

1 1 .

.< 2013.3.23., 2014.11.19.>

[2011.7.4.]

2 2()

[2011.7.4.]

3 ()

(「 가 3 3 가 가) .
(連名)

[2011.7.4.]

4 (.) (公私) .

[2011.7.4.]

4 2()

1.

2.

3.

4. 가

[2011.7.4.]

5 ()

(防護員)

, 가

가

.< 2013.3.23., 2014.11.19.>

[2011.7.4.]

6 () (" ")

가

30

가

[2011.7.4.]

6 2() 32 3

[2011.7.4.]

7 () 32 4

[2011.7.4.]

8 ()

15

[2011.7.4.]

8 2()

3

.< 2013.3.23., 2014.11.19.>

[2011.7.4.]

8 3()

, 가,

2013.3.23., 2014.11.19.>

1

.< 2013.3.23., 2014.11.19.>

[2011.7.4.]

2

9 () 1 40 , (休務)

1 9 6 , 12 1 .
, , 1

1 40 .< 2013.3.23., 2014.11.19.>
「 」 32 2

[2011.7.4.]

10 () , (" ") 9

1 2 .< 2013.3.23., 2014.11.19.>

9 4 (" ")

가

.< 2013.3.23.,
2014.11.19.>

[2011.7.4.]

11 ()

9 10
1

가

[2011.7.4.]

12 ()

1.
2. 1 가 가

3. 「 」
[2011.7.4.]

13 <2005.6.30.>

3 가

14 (가) 가 가(年暇), 가, 가(公暇) 가

[2011.7.4.]

15 (가) 가 , 28 2 2 • 3 10
 2 가 2 . < 2013.3.23.,
 2013.12.11., 2014.11.19.>

재직기간	연가 일수
3개월 이상 6개월 미만	3
6개월 이상 1년 미만	6
1년 이상 2년 미만	9
2년 이상 3년 미만	12
3년 이상 4년 미만	14
4년 이상 5년 미만	17
5년 이상 6년 미만	20
6년 이상	21

1 " " 「 」 23 1 3 (算入)

- 71 2 4 (1 1 1)
-
- 「 」 . . .

- 가 가 1
- 16 5 가 가 가 [2011.7.4.]

15 2 <1981.6.24.>

16 (가 가) 가가
 (忌日) 가 . 가 , 23
 15 가 가 7 가 가 23
 가 (半日) 가 , 가 2 가 1 .
 가 가 가 가 가 가 가
 가 가 가 가 가 가 가
 20 가 가 가 가 가 가
 가 가 가 가 가 가 가
 가 가 가 가 가 가 가 . < 2013.3.23.,

2014.11.19.>

[2011.7.4.]

17 (가) , ,
 가 .
 () 가 ,
 15 1 15 ,

$$\frac{\text{해당 연도 휴직기간(개월)}}{12(\text{개월})} \times \text{해당 연도 연가 일수}$$

18 1 가 6 가 가 8 가 1 .
 가 가 . , 가

[2011.7.4.]

18 (가) 60 가
 가 . 8 가 1 ,
 17 4 가 가 가 .
 1.
 2. 가

180 가 가 .
 가 가 7 .

[2011.7.4.]

19 (가)
 가 가 . < 2012.8.31.>
 1. 「 」 . 가
 2. , , 가
 3. 가
 4. .
 5. (遠隔地) (轉補)
 6. 「 」 43 「 」 52
 7. 「 」 가
 8. 「 」 32 5
 9. , 가 가
 10. , 가
 11. 「 」 9 (選任)

[2011.7.4.]

20 (가) 가 2 가

. < 2011.7.4.>

120) 가 가 , 가 45 (90 (60)

가 44 (59)

가 .< 2014.6.30.>

1. (「 」 14 1) . 3) .

2. 가 40

3. .

1 가 . ,

가 .< 2011.7.4.>

12 36 1 2

.< 2013.5.31.>

1 가 1 1 .< 2011.7.4., 2013.5.31.>

15 가 가 .< 2011.7.4., 2013.5.31.>

<2005.6.30.>

<2005.6.30.>

. . 5

가 .< 2011.7.4.>

가 가 .< 2011.7.4., 2014.6.30.>

1. 11 : 5

2. 12 15 : 10

3. 16 21 : 30

4. 22 27 : 60

5. 28 : 90

1 가 . ,

1 가 가 .< 2011.7.4.>

21 <1972.5.4.>

22 (가) 가 가 .

, 가 가 30 가 .

[< 2011.7.4.>

23 () 가 . ,

.<

2013.3.23., 2014.11.19.>

[< 2011.7.4.>

24 (가) 가 가 .
[2011.7.4.]

24 2(가) 「 」 2 1 1 가
. < 2013.3.23.>
[2011.7.4.]

24 3(가)
가 15 1 , 17 3 · 4 , 18 1 · 3 , 20 4 6
22 3 . < 2013.12.16.>
[2013.12.11.]
[2013.12.16.]

4 < 2011.7.4.>

25 () , 가 ,
가 .
1. , ,
2. , , (私企業體) .
3. .
4.
[2011.7.4.]

26 (가) 25
가 .
1 가 .
1 " " , 3
. < 2013.12.11.>
[2011.7.4.]

5 < 2011.7.4.>

27 () 65 가
.
1. , ,
2.
3.
1 1 가
1. . 가
2. .

3.

4.

• •
(旗) • • •

5.

[2011.7.4.]

28 () 66

(

)

< 2011.7.4., 2013.3.23., 2013.12.11., 2013.12.16., 2015.3.11.>

1. •

2.

3.

4. 「 」 가

5.

[2011.7.4.]

< 26140 ,2015.3.11.>

1 ()

2

3 ()

가

28 4 " " " 가 " .

[별표 1] <개정 2010.7.15>

선 서 문(제2조제2항 관련)

선 서

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, 국가를 수호하며,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.

[별표 2] <개정 2011.7.4>

경조사별 휴가 일수표(제20조제1항 관련)

구분	대상	일수
결혼	본인	5
	자녀	1
출산	배우자	5
입양	본인	20
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2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2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

비고: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.

[별표 3] <개정 2014.11.19.>

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 기준(제24조의3 관련)

1. 휴가일수 계산 등

- 가.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, 휴가는 일(日) 단위로 계산한다.
- 나.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(算入)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휴가일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.
- 다. 휴가기간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,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.

2. 연가

- 가.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,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 이 경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재직기간의 산정 및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$$\text{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 제15조에 따른 재직기간} \times \frac{\text{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}}{\text{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}} \times 8$$

별 연가일수

- 나.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이를 합산한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.
- 다. 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 중 연간 3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병가기간 중에 근무해야 할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3. 병가

- 가.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.
- 1)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
 - 2)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

나. 가목의 경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1일 평균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·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고, 제2호다목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.

4. 특별휴가

가.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.

나.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.

다. 수업휴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.